

대 전 고 등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5나7939(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05나7984(반소) 보험금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종로1가 1

대표이사 박성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장석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1. 조●● (●●-●●)

2. 조●● (●●-●●)

3. 조●● (●●-●●)

피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조●●

피고들 주소 대전 서구 월평동 ●●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전제일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심재필

제1심 판결 대전지방법원 2005. 7. 12. 선고 2004가단62433(본소), 2005가단  
25615(반소) 판결

변 론 종 결                    2005. 10. 5.

판 결 선 고                    2005. 11. 2.

## 주 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본소 : 별지 목록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조●●에게 49,200,000원, 피고 조●●, 조●●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 조●●에게 49,200,000원, 피고 조●●, 조●●에게 각 2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 이 유

### 1. 기초사실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2. 본소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가 투신자살한 행위는 위 각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1, 2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그 확인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가 투신자살할 당시 심한 우울증에 빠져 있었고, 이러한 사유는 위 각 보험약관에서 위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들에게 위 각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그 보험금의 지급을 구한다.

#### 나. 판 단

(1) 이 사건 피보험자인 이●●가 자살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는 제1, 2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에서 면책사유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함은 분명한바, 나아가, 피고들 주장과 같이 이●●의 자살이 면책사유의 예외로 규정한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

위에서 본 보험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은 상법 제659조 제1항의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는 규정과 동일한 내용으로서, 이는 피보험자가 보험사고인 자신의 죽음을 자살에 의하여 실현하는 것은 계약당사자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고, 이러한 자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생명보험이 부당한 목적으로 당할 가능성이 있음은 물론 다른 보험계약자에게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와 같은 폐해를 방지하고 보험의 단체성을 보호하기 위함에 그 취지가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자살면책조항의 예외인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는 피보험자의 정신장해가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 내지 현저하게 미약하게 한 결과 자살에 이른 경우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의 의미는, 위 조항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을 해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고,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라 하더라도 위 각 보험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였을 경우에는 보험자의 지급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로 보아야 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자신을 해친 경우로만 제한해서 해석할 것은 아니므로, 위 규정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이든 그렇지 않은 경우이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치는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들 주장과 같이 볼 경우에는 앞서 본 자살면책조항의 취지가 몰각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과 제1심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오●●, 정●●) 및 제1심 증인 이●●의 증언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래 명랑한 성격이던 이●●는 2003년경 남편이 실직한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직접 독서실을 운영하거나 피아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독서실운영이 어렵게 되자 독서실운영자금으로 사용한 부채에 시달리는 등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던 사실, 이로 인하여 이●●는 불안, 불면증을 동반한 정도의 우울장애, 기분부전증 등을 앓게 되어 2003. 10. 21.부터 2004. 4. 3.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간헐적으로 오●● 신경정신과의원 및 정●● 정신과의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고, 사망할 때까지 주위 사람들에게 자주 “죽고 싶다”는 등의 말을 하였던 사실은 인정이 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이●●가 위 사고 당시 자살자에게 흔히 나타나는 심리적 우울상태를 넘어 그 우울증 등이 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능력을 상실 내지 현저하게 미약하게 한 결과 이●●가 자살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2) 따라서, 원고는 피보험자인 이●●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보험약관상의 자살면책조항에 의하여 면책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피고들이 이를 다투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보험금지급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각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들의 항소는 모두 이

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 \_\_\_\_\_

                 판사      박●● \_\_\_\_\_

                 판사      김●● \_\_\_\_\_

## 목 록

### 1. 보험계약

가. 보험종목 : 무배당 교보종신보험

나. 계약일 : 2003. 6. 5.

다. 보험기간 : 20년

라. 보험료 : 월 102,200원

마.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이●●

바. 수익자 : 상속인

사. 보험가입금액 : 7,000만원

### 2. 보험계약

가. 보험종목 : 무배당 패밀리 어카운트(FAMILY ACCOUNT)보험

나. 계약일 : 2003. 9. 23.

다. 보험기간 : 10년

라. 보험료 : 월 160,000원

마.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 이●●

바. 수익자 : 조●●

사. 보험가입금액 : 1,920만원. 끝.